제100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(보건복지부)	1.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기준(신설) ○ 치료 실시 기관은 승인받은 치료계획에 따라 인체세포등 처리,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이용, 안전관리기관 협조 등 실시기준을 준수 ▶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	1.비중요
		2.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를 위한 자료 제출(신설) ○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심사받기 위해 인체세포등 처리계획, 시설·장비·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치료계획 자료를 제출 필요 ▶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	2.비중요
		3.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중 자료 제출(신설) ○ 재생의료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현황, 이상반응 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▶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·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	3.비중요
2	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소방청)	1.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 기간 연장(신설) ○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 기간을 30일에서 다음 자체점검기록표 게시일까지 연장 ▶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▶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신용공여 적용 지역별 차등화(신설) ㅇ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 차등화* * 수도권 여신 90%, 비수도권 여신 110% ㅇ 또한, 적용 대상 저축은행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여신공급 확대 등을 위한 유예 기간 부여 (예: 1년) ▶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▶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▶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2	1.비중요
4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 기준(신설) ㅇ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▶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	1.비중요